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0
----------	-----

제 출 일 : 2024. 10. 10.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에코-랜드(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 내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9년 12월 31일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내용 정비

- 1) 위원회 명칭: 기금운용심의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2)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정비 등

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나.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20일간)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부서협의

- 1)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개선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심의회 운영)”을 “(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심의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6월 말일”을 “5월 31일”로 한다.

조례 제867호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조례 제1692호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자원순환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남 경 화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원시설팀장 백 승 조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세 광 (031-590-425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u>예탁하여야 한다</u>. 다만, 장학금과 주민복지금의 경우 각각 별도로계좌로 관리한다.</p> <p>④·⑤ (생략)</p> <p>⑥ <u>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p> <p>제8조(<u>기금운용심의회 등</u>)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u>기금운용심의회</u> (이하 “<u>심의회</u>”라 한다)를 둔</p>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예탁할 수 있다.</u>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8조(<u>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u>) ① ----- ----- ----- ----- <u>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u>심의위원회</u>”라 한</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생략)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코-랜드 업무담당자이다.

제1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생략)

②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 심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

-----.

④ 심의위원회-----

-----.

⑤ 심의위원회-----

-----.

제1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67호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5월 31일-----
-----.

조례 제867호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존속기한) -----
----- 2029년 12월 31일-----.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
2. 에코-랜드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그 밖의 수익금(이자 등)

부칙 제2조(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2029년까지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전출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과거 5개년 기금 전출금과 인구의 상관관계를 향후 5개년 인구 추계에 대입하여 기금 전출금 추계

(단위 : 인,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인구수	701,830	713,321	733,798	737,353	735,521	-
전출금	1,152,282	1,325,814	1,436,528	1,468,783	1,457,401	-
인당 전출금	1.642	1.859	1.958	1.992	1.981	1.886

※ 인구수 : 전년도 말 기준 / 전출금 :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추계결과

- 경기통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5개년 인구수에 인당 전출금을 셈하여 기금 전출금 추계

(단위 : 인,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구수	744,337	754,428	763,018	770,273	777,090
전출금	1,403,820	1,422,851	1,439,052	1,452,735	1,465,592

※ 인구수 : 전년도 말 기준 / 전출금 : 인구수 × 인당 전출금(과거 5개년 평균)

다. 재원조달방안: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종량제 봉투 판매액)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1,403,820	1,422,851	1,439,052	1,452,735	1,465,592	7,184,050
기타회계전출금		1,403,820	1,422,851	1,439,052	1,452,735	1,465,592	7,184,050
재원 조달							
자체	소 계	1,403,820	1,422,851	1,439,052	1,452,735	1,465,592	7,184,050
수입	세외수입	1,403,820	1,422,851	1,439,052	1,452,735	1,465,592	7,184,050

※ 세외수입 : 종량제 봉투 판매액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4A경기남양042)

1. 자원순환과-18289(2024. 6. 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4A경기남양042)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인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김윤영	여성아동과장	이문경	복지국장	전결 2024. 6. 14. 최재웅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7037	(2024. 6. 14.)		접수	자원순환과-18549	(2024. 6.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여성아동과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남양042		
정책명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김세광	전화번호 031-590-4258
성별영향평가가서 제출날짜	2024년 6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p>○ 제·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랜드(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증진 -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연장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자원순환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4-44)

자원순환과-18291(2024.6.12.)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서 *서광근*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신경주	감사관	2024. 6. 14. 서상근
협조자					
시행	감시관-6803	(2024. 6. 14.)	접수	자원순환과-18576	(2024. 6.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관 리 번 호	2024-남양주-44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공업8급 김세광
평 가 결 과 통 지 과 일	2024. 6. 14.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4년 6월 14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p>			
<p>자원순환과장 귀하</p>			

붙임 4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남양주시 자원순환과-18290(2024. 6. 12.)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민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회 법 무 과 장 기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남상명	의회법무과장	윤산기	2024. 6. 12.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7424	(2024. 6. 12.)		접수	자원순환과-18318	(2024. 6. 12.)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붙임5 입법예고 결과보고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자원순환과-22433(2024. 7. 17.)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8.(목) ~ 2024. 8. 7.(수) /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마.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입법절차 이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김세광	자원시설팀장	백승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환경국장	양현모	전결 2024. 8. 12.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철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시행	자원순환과-24992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금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258	팩스번호	031-590-2269	/ luxmundi@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심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6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4. 4. 1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